

공시송달공고

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(폐문부재)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. 7. 22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- 공고기간 : 2024.7.22. ~ 2024.8.5.
-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

가. 제목	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통지서 공시송달 공고	
나. 대상자	안경*	
다. 처분의 원인	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1항(무등록이륜차)	
라. 의견 제출처 및 문의처	기관명	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
	주소	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(자동차등록팀 ☎ 330-1163)

- 납부 방법 : 서대문구 교통행정과(자동차등록팀 ☎02-330-1163)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전국은행, 농협, 우체국 등에 납부 또는 인터넷(서울시 e-tax시스템) 및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과태료 미납 시 최고 75%(납기경과 3%, 납기후 60개월까지 월 1.2% 가산)의 가산금이 부과되며,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.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, 신용정보 제공, 감치 등의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,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의제기 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결정됩니다.